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53

발의연월일: 2020. 1. 21.

발 의 자:윤재옥·안병길·김희곤

정희용 · 김용판 · 김승수

류성걸 · 김예지 · 홍석준

양금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보상, 진료,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는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라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 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① 국
	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
	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